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**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|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|

1	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	•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(단, 2018.12.11.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)
2	신청유형 확인 필수! 소득 100% 이하(맞벌이 120%) - 우선공급 50% 소득 140% 이하(맞벌이 160%) - 일반공급 20% 소득 160% 초과 - 추첨제 30% (부동산가액 3.31억원 이하 충족)	• '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'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여야 합니다. • '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(30% 물량)가 신설되었습니다. [단, 부동산 가액(토지: 공시지가, 건축물: 시가표준액, 전세보증금 제외) 약 3.3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]
3	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	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(포항시 거주자, 전용 84㎡ 200만원 이상 충족)

| 공급유형별 청약 자격조건 |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•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) 이하인 분 (단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하여야 함)은 소득우선공급(70%) 자격으로 신청가능 -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억3,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(30%) 자격으로 신청가능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선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-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• 순위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(「민법」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,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)가 있는 경우(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) - 2순위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/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2018.12.11. 시행) 부칙 제5조(상기 “청약자격” 참조)에 해당하는 경우 •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주택건설지역(포항시) 거주자 2.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(임신,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)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3.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

|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|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208,934원	7,200,809원	7,326,072원	7,779,825원	8,233,578원	8,687,331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6,208,935원~7,450,721원	7,200,810원~8,640,971원	7,326,073원~8,791,286원	7,779,826원~9,335,790원	8,233,579원~9,880,294원	8,687,332원~10,424,797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140%이하	6,208,935원~8,692,508원	7,200,810원~10,081,133원	7,326,073원~10,256,501원	7,779,826원~10,891,755원	8,233,579원~11,527,009원	8,687,332원~12,162,26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160%이하	7,450,722원~9,934,294원	8,640,972원~11,521,294원	8,791,287원~11,721,715원	9,335,791원~12,447,720원	9,880,295원~13,173,725원	10,424,798원~13,899,730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8,692,509원~	10,081,134원~	10,256,502원~	10,891,756원~	11,527,010원~	12,162,264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	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 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 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 - 추첨제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,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